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- 468 호

2022년도 「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」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3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」 202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

1. 사업 목적

- ☐ 신·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, 성능시험장비구축,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

2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- ☐ 지원대상 분야 : 신재생에너지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

- ☐ 신규과제 지원규모 : 130백만원('22년 기준)

NO	내역사업	과 제 명	정부출연금 ('22년)	당해연도 사업기간
1	부품표준화	BIPV 유형별 표준·인증 방법론 개발	130백만원 이내	7개월 이내
합 계			130백만원 이내	-

* '22년 예산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,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
** 전체예산 규모 및 사업기간은 과제별 제안요청서 참고[붙임]

- ☐ 공모방식 : 지정공모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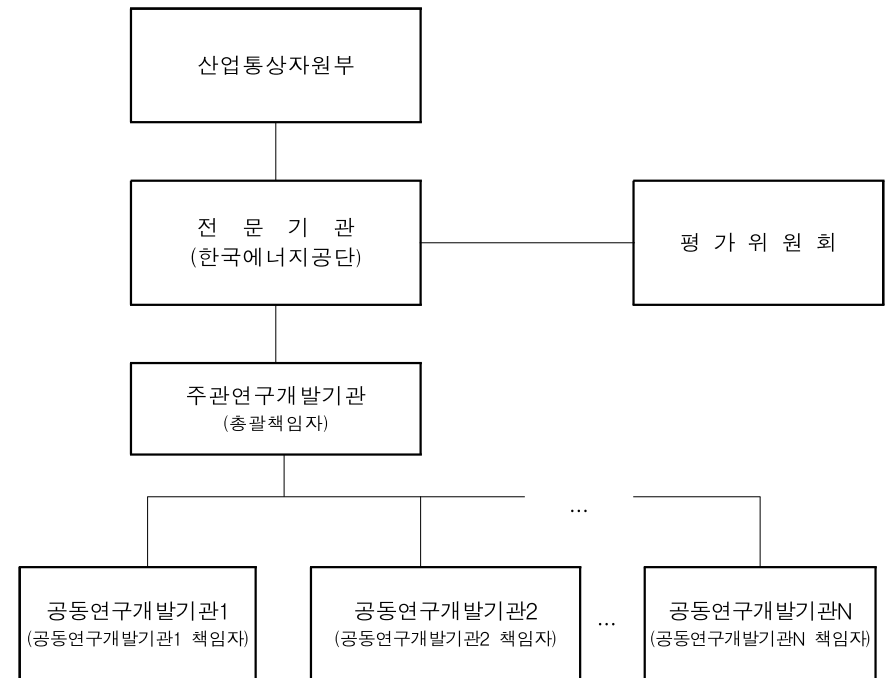
*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·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

- 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: 총 사업비의 100%까지

- ☐ 기술료 징수여부 : 비 징수

- ☐ 공모과제 평가일 :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

- ☐ 추진체계



* 산업통상자원부 :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총괄

* 전문기관 : 사업수행 및 관리(수요조사·공모·선정·협약체결·평가 등)

* 평가위원회 :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, 연차평가, 최종평가 등

* 주관연구개발기관 : 연구소, 기업, 대학 등으로 전담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

* 공동연구개발기관 : 공동 사업수행 기관

※ 관련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4호(2022.01.04.)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

□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

-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 - * 정부 기 지원·개발 여부 확인 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“유사과제” → “유사과제 시작하기”를 통해 조회
- 제기기간 : 2022.6.3(금) ~ 6.10.(금) 18:00
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- 제 기 처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대리
 - * 세부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(우정동 528-1), 연락처: ☎052-920-0713

3. 신청자격

□ 주관연구개발기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

-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법인사업자
 - *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
 - *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1항, 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「민법」 또는 타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-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

□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- 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15조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)
-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및 해당분야 관련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
 - * (예외사항)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, 원 소속 기관장이 검임·겸직을 허가한 경우, 「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

4. 신청방법

□ 산업기술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
□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

구 분	내 용
전산 접수기간	2022. 6. 3(금) ~ 6. 22(수) 18:00 까지
사업계획서 접수기간	2022. 6. 3(금) ~ 6. 22(수) 18:00 까지

- 전산 등록처 : 산업기술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연구과제수행 → 과제접수 메뉴(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)
 - * 전산등록 마감 당일 전산폭주 등으로 접수지연,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접수 요망
- 제 출 처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대리
 - * 세부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(우정동 528-1), 연락처: ☎052-920-0713

<제출 유의사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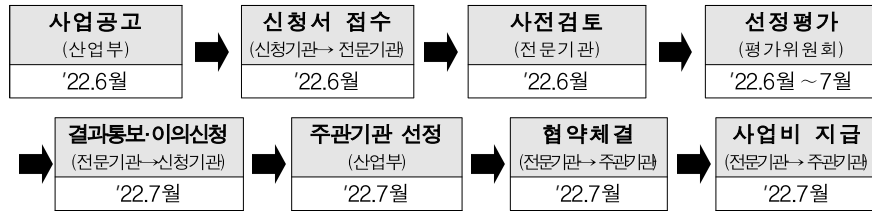
- 전산 등록기간 중 전산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(온라인 '제출완료' 상태인 과제만 인정)
- 우편 송부시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, 신청과제명, 신청기관 등을 기재할 것
- 서류접수(우편)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(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-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
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사업공고 참조

5. 평가절차 및 방법

□ 평가절차



*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공모된 과제는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시,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되어야 함

□ 평가방법

- **(평가항목)** 사업목표의 구체성, 수행능력 여부, 참여 정도, 파급효과, 활용방안, 연구기반 확보정도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(제안서)평가 예정
*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 평가(평가항목별 배점 분배예정)
- **(평가기준)** 종합평점 60점 이상시 “지원대상”, 60점 미만시 “지원제외”
*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
**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득점 순으로 선정

6. 관련 규정

□ 근거법령 :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, 관련규정*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 등

7. 유의사항

□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

- 신규과제로 선정 시,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* 신청하여야 함
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6조(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)

□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

-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% 이상이어야 함
* 과제 참여연구원의 총합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자율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,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,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,
-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(연구비)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(특별평가 등)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제20조(사업의 신청)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 별표3*에 해당하는 경우
*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-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에 따라 처리함
*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,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

8. 문의처

□ 전산등록 문의 : 산업기술 R&D 종합포털 상담콜센터(☎ 1544-6633)

□ 사업문의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대리(☎ 052-920-0713)

붙임 신규 지원대상과제 제안요청서(RFP)

RFP					
과 제 명		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(BIPV) 제품 유형별 표준·인증 방법론 개발			
총사업기간		19개월 이내		당해년도사업기간	7개월 이내
정부출연예산		1차년도(백만원)	130	전체예산(백만원)	500
□ 사업개발 요구사항					
사업필요성		○ 정부 「재생에너지3020」 및 「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」 정책 이행을 위해 태양광 설치 입지 유형 다각화 필요성 증가(건물형일체형 태양광 수용기반 마련) ○ 건물형일체형 태양광 관련 시험평가/인증 등은 산업부, 국토부 등 다양한 평가체계가 혼재되어 있어, 안전과 출력성능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기준설정 시급			
기반구축 동향	국내	○ “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성능평가기준”을 바탕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플렉서블(Flexible) 소재 또는 컬러모듈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관련표준, 인증방법 등의 개정 필요성 대두 ○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발맞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KS인증의 신제품 수용성,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기준, 국토부 건축물 외장재 안전사항 강화 등으로 현장혼란이 발생 가능			
	국외	○ IEC, ISO 등 국제표준기구는 BIPV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IEC에서는 IEC 63092 Photovoltaics in buildings의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- 하지만, BIPV 모듈의 전기적인 특성은 IEC 61215, 61646, 61730을 준용하여 활용하고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건축 요구사항이 상이하여 local code를 따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표준 부합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			
최종목표		○ 건축일체형 태양광(BIPV) 제품유형 및 시공유형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기술표준(전기적 출력 및 건자재 성능) 설정 및 인증 방법론 도출 ○ 다양한 BIPV 제품 특성과 전기안전(전안공), 건축안전(국토부) 기준이 반영된 KS표준 개정(안) 마련			
수행내용		○ IEC 부합화 표준 등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KS C 8577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성능평가기준) 개정(안) 마련 - 현행 BIPV KS표준에 대한 개정소요 파악 및 개선항목 도출 * 모듈 범용성(컬러, 크기 등) 확보를 위한 KS인증기준 개정(안) 마련 ○ BIPV 안전기준(국토부, 전안공) 검토를 통한 설치유형별(지붕형, 외벽형) BIPV 표준(안) 마련 - 설치유형별(지붕형, 외벽형) BIPV 기준적용 방법 - BIPV 설치유형별 전기적 입출력 및 건자재 성능 요구사항 분석 - BIPV 시제품(시공) 설치유형별 성능 특성 시험평가 방안 마련 ○ 제품(모듈) 및 건자재(건축물) 인증을 고려한 종합적인 성능 인증체계 마련 - 기본 요구사항과 설비유형별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표준적용 융통성 및 확장성이 용이도록 표준(안) 또는 인증방법론 구성			